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마약취급에관한 사무」, 「의료법인에관한 사무」 「응급환자이송업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 되었기에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그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 필요
- 의회사무과 위임사무 중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 등 정비

2. 주요내용

구분	사무명	변경 사유
신설	○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사무 ○ 약국 사무 일부(등록증 갱신·재발급, 약국의 장소 판매승인, 포상금 지급) ○ 의료기기사무 일부(신고증재발급,지위승계)	○ 신규업무 또는 업무효율을 위한 권한위임 필요업무 추가
	○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사무 ○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 법령상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군구청장 업무로 권한 변경되어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이동
삭제	○ 의료보수신고	<법개정에 따른 삭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 고지”로 전환
기타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 개정(기능직·계약직 → 임기제·일반직공무원)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변경 ○ 업무명칭 명확화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02-3396-4903, FAX 02-3396-8665, bdss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02-3396-49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구의회 사무국장” 을 각각 “구의회 사무과장”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입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	구 의 회 사무과장	
나. 의회내 별정직·임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91조	구 의 회 사무과장	
다.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	보건소장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보건소장	
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같은 법 제22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개수 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같은 법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마.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바. 청문실시	○ 같은 법 제77조		
사.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자.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차. 약국,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승인	○ 같은 법 제50조제1항		
카.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7조		보건소장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다.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4.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가. 개설신고 나. 변경신고 다. 휴·폐업신고 라. 지도·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 취소 등) 마.. 청문실시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7조 ○ 「의료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제92조	보건소장
5.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5조	보건소장
6.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고·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개설·변경, 휴·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	○ 「의료법」 제82조 ○ 같은 법 제81조	보건소장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실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보건소장
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실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보건소장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마.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 등록 요청 사. 구급차의 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50조 	
10.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신고대상인 경우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나. 청문 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11.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나.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16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 의료법 제16조, 제63조, 제64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1조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재발급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대마의 운반, 보관 등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등 아. 출입, 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45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마. 청문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자.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관련 별표6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9조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나. 휴업·폐업 및 재개신고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마. 청문 바.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u>구의회 사무국장</u>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 ----- ----- ----- <u>구의회 사무과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u>구의회 사무국장</u>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p> <p>② (생략)</p>	<p>제5조(위임사무) ①----- ----- <u>구의회 사무과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	사 무 명
근거법령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임기관
<p>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p> <p>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p> <p>나. 의회내 별정직·<u>기능직·계약직</u> 공무원의 임용권</p> <p>다. 소속 공무원의 승급</p> <p>라. <u>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u>의 소내 전보</p>	<p>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p> <p>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p> <p>나. 의회내 <u>별정직·임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u></p>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삭 제></p> <p><u>다.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u>의 소내 전보</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p> <p>○ 지방자치법 제83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p> <p>○ 지방자치법 제91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②</p>
<p>구의회 사무국장</p> <p>구의회 사무국장</p> <p>구의회 사무국장</p> <p>보건소장</p>	<p>구의회 사무과장</p> <p>구의회 사무과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6. 약국업무</p> <p>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p> <p>나. 폐업·휴업·재개업신고</p> <p>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u>폐기명령</u>, 개수명령, 관리</p>	<p>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p> <p>나. 폐업·휴업·재개업신고</p> <p>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u>회수폐기 및 공표명령</u></p>
<p>○ 「약사법」 제16조</p> <p>○ 동법 제20조</p> <p>○ 동법 제64조 내지 69조</p>	<p>○ 「약사법」 제20조제2항</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라. 삭제(2001.10.10) 마. 삭제(2001.10.10) 바. 삭제(2001.10.10) 사. 제조품목 신고 아. 제조업무 폐지 자. 청문실시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33조 		등 개수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 바. 청문실시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자.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u>지 제76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7. 의리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리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u>다. 보고와 검사 등</u> <u>라. 폐기명령 등</u> 마. 청문 바. 과징금부과 및 징수 사. 과태료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리기기법」 제16조 ○ 「의리기기법」 제32조 ○ 의리기기법, 제28조 ○ 의리기기법, 제30조 ○ 「의리기기법」 제34조 ○ 「의리기기법」 제33조 ○ 「의리기기법」 제47조 	보건소장	3. 의리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리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삭 제> <삭 제> <u>다. 청문 실시</u> <u>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u> <u>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u> <u>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u> <u>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리기기법」 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47조 	보건소장
8. 의료기관 업무(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사무 가. 개설신고 나. 변경신고 다. 휴·폐업신고 라. 지도·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0조제3항 ○ 동법 제30조제6항 ○ 동법 제33조 ○ 동법 제49조 내지 	보건소장	4.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가. 개설신고 나. 변경신고 다. 휴·폐업신고 라. 지도·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p> <p>마. 의료부수신고 바. 청문실시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징수</p> <p>9.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p> <p>10.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고·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개설·변경·휴·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p> <p>11.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고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보고의 청구와 검사 등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실시</p> <p>12.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 치과기공소의 인정 나. 폐업 또는 인정사항의 변경신고</p> <p>다. 양수신고</p> <p>라. 감독(조사, 업무정지, 인정취소 등)</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51조</p> <p>○ 동법 제37조 ○ 동법 제63조의2 ○ 동법 제53조의2 ○ 동법 제72조 ○ 「의료법」 제31조</p> <p>○ 「의료법」 제61조</p> <p>○ 동법 제60조</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5조 ○ 동법 제24조 ○ 동법 제33조 ○ 동법 제23조 ○ 동법 제26조</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 취소 등</p> <p><삭 제> 마. 청문실시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과태료 부과·징수</p> <p>5.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p> <p>6.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고·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개설·변경·휴·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p> <p>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실시</p> <p>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삭 제> <삭 제></p> <p>다. 보고와 검사 등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실시</p> <p>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마.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p>	<p>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p> <p>○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제92조 ○ 「의료법」 제35조</p> <p>○ 「의료법」 제82조</p> <p>○ 같은 법 제81조</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p> <p>○ 같은 법 제13조</p> <p>○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p> <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신설>			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u>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 <u>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u> <u>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u> <u>라.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u> <u>마. 청문</u> <u>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u> <u>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u> <u>야. 과태료부과 및 징수</u> <u>자.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u>	○「약사법」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제7호관련 별표6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9조	보건소장
<신설>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u>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u> <u>나. 휴업, 폐업 및 재개신고</u> <u>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u> <u>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u> <u>마. 청문</u> <u>바.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u> <u>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u> <u>야. 과태료부과 및 징수</u>	○「약사법」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